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15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은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및 보육하고, 여의도 서울핀테크랩과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울의 디지털금융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제2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 투자 연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 추진 필요성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현장 중심의 운영 역량이 요구되며, 변화가 빠른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민간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입주기업 관리) 모집·선정 및 평가, 공간 관리, 사용료 징수 등
- (경영안정화 지원) 진단컨설팅, 기술·법률 등 멘토링, 교육 운영
- (시장 진출 지원) BM고도화, 마케팅 지원, 인재채용 등 기획·운영
- (규제 개선 지원) 혁신금융기술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 (블록체인 특화) 블록체인 기술 활용 관련 OI연계, 포럼 개최 등
- (투자유치 지원) IR Deck 제작, IR 밋업 및 데모데이 개최 등
- (성과조사)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 우수 사례 발굴 등
- (시설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이행 등

라. 위탁사무 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8·11층
- 시설규모 : 총 3,478 m^2 (전용면적 1,644 m^2)

- 지원시설 : 기업 사무공간, 교육장, 공용라운지 등
- 위 치 도



마. 위탁기간 : 3년('27.1.~'29.1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04,395천원('26년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 362,100천원, 운영비 97,176천원, 사업비 316,122천원, 이윤 등 기타 28,997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나. 예산조치 : 2027년 민간위탁금 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경제실 금융투자과 이루다 (☎2133-5249)